

농 산 물 의 생 산 자 를 위 한
직 접 지 불 제 도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안

2023. 11.

농 립 축 산 식 품 부
(공익직불정책과)

1. 개정이유

중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은퇴직불)이 '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됨에 따라 개편(안)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직불로 변경(안 제2조~제27조, 별표1, 서식1~2)

사업명칭이 “경영이양직접지불”에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변경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명칭 변경에 따라 “경영이양”을 “농지이양”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용어 변경

나.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연령 및 지급기간 확대(안 제3조·제6조, 별표1)

농업 지원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연령을 74세까지에서 79세까지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75세에서 84세로 개선

다. 농지이양 이후의 경작허용면적 축소(안 제5조)

고령 농업인의 실질적 은퇴 유도를 위해 당초 3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면적(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경작허용 면적을 축소하되,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경지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 등)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당초대로 3천제곱미터 이하 소유·경작 허용

라. 농지이양 대상자 개선(안 제7조1항)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 등을 위해 농지이양 받는 대상 우선순위를 “전업농업인” 중심에서 “청년농업인”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신청 서류 중 매매계약서를 “전업농업인”에서 “청년농업인”으로 개선

마. 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으로 통합 또는 이관된 제도는 농산물직접지불제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 * 발농업직불제(안 제1조의2, 제18조~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
- * 친환경농업직불제(안 제10조~제12조, 제27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 서식 3~4)
- * 친환경축산직불제(안 제12조의2~제12조의4, 서식 5~6)
- * 경관보전직불제도(안 제16조~제17조의2, 제27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서 제43조까지, 별표1, 서식1에서 서식2까지 “경영이양직접지불”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로 “경영이양”을 “농지이양”으로 “경영이양보조금”을 “농지이양은퇴보조금”으로 한다

제3조 중 “74세”를 “79세”로 한다.

제5조 “3천제곱미터를 말한다”를 “1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다만, 소유 농지 중 영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제①항제2호 중 “전업농업인”을 “청년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1 지급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하고,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75세”를 “84세”로 한다.

현행		개정안	
연령	지급기간	연령	지급기간
66세 이하	10년	75세 이하	10년
67세	9년	76세	9년
68세	8년	77세	8년
69세	7년	78세	7년
70세	6년	79세	6년
71세	5년		
72세	4년		
73세	3년		
74세	2년		

제1조의2, 제10조~제12조의4, 제16조~제26조, 제27조제①항제1호나목·라목·마목 및 제2호 나목·라목·마목, 서식 3~6을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생략)	<삭제>
제2조(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u>경영이양소득보조금</u> (이하 “ <u>경영이양보조금</u> ”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u> (이하 이 조에서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 ① ----- -----) ----- ----- ----- <u>농지이양은퇴</u> ----- (“ <u>농지이양은퇴</u> -----”-----) ----- ----- <u>농지이양은퇴</u>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3. ----- <u>농지이양은퇴</u>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해당 연도의 <u>경영이양보조금</u> 의 규모	1. ----- <u>농지이양은퇴</u> ----- -----
2. <u>경영이양보조금</u>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2. <u>농지이양은퇴</u> ----- -----
3.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3. <u>농지이양은퇴</u> ----- -----
4.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의 방법 및 시기	4. <u>농지이양은퇴</u> ----- -----
5. 그 밖에 <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에	5. ----- <u>농지이양은퇴</u> -----

필요한 사항	-----
제3조(<u>경영이양보조금</u> 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u>74세</u> 이하를 말한다.	제3조(<u>농지이양은퇴</u> -----) ----- ----- ----- <u>79세</u> -----.
제3조의2(<u>경영이양보조금</u> 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제3조의2(<u>농지이양은퇴</u> -----) -----) -----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4조(<u>경영이양보조금</u> 지급대상 농지 등) ① (생략)	제4조(<u>농지이양은퇴</u> -----) -----)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u>경영이양</u> 이전에 「 <u>농어촌정비법</u> 」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1. <u>농지이양</u> ----- ----- ----- ----- ----- -----
2. <u>경영이양</u>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2. <u>농지이양</u> ----- ----- ----- ----- -----
가·나. (생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u>경영이양</u>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 <u>농림축산식품부령</u> 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u>3천제곱미터</u> 를 말한다.	제5조(<u>농지이양</u> -----) -----) ① ----- ----- ----- ----- <u>1천제곱미터 미만</u> -----. <u>다만, 소유농지 중 영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하를</u> 말한

② (생 략)	다.
제6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기간)	② (현행과 같음)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 이란 별표 1과 같다.	제6조(농지이양은퇴)-----) ----- -----.
제6조의2(경영이양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영이양 면적 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 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 제곱미터로 한다.	제6조의2(농지이양)-----) -- ----- 농지이양 ----- ----- -----.
제7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 정 신청) ① 영 제9조에 따라 경영 이양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영이양보 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경영이양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 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농지이양은퇴)----- -----) ① ----- 농지이양 은퇴----- ----- 농지이양은퇴- ----- --- (“농지이양은퇴-----”---)-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 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 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 ----- 청년농업인----- -----)
② 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 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 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농지이양은퇴----- ----- ----- ----- ----- ----- ----- ----- ----- ----- -----.

1.2.3. (생 략)	1.2.3. (현행과 같음)
제8조(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 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경영 이양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 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보조금 지 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농지이양은퇴)----- --) ① ----- 농지 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경영 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농지 이양은퇴----- ----- -----.
제9조(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경영이양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경영이 양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 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 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9조(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 은퇴----- ----- 농지이양 은퇴----- ----- -----.
제10조(친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면적 상한 등) (생 략)	<삭 제>
제11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생 략)	<삭 제>
제12조(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의 선정) (생 략)	<삭 제>
제12조의2(친환경축산보조금의 지급 상한 등) (생 략)	<삭 제>
제12조의3(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 상자 선정 신청) (생 략)	<삭 제>
제12조의4(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 상자의 선정) (생 략)	<삭 제>

제16조(경관보전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생 략)	<삭 제>
제17조(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 략)	<삭 제>
제17조의2(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 (생 략)	<삭 제>
제18조(발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 제외 농지) (생 략)	<삭 제>
제19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생 략)	<삭 제>
제20조(발농업보조금의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생 략)	<삭 제>
제21조(발농업직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생 략)	<삭 제>
제24조(등록사항의 변경 등) (생 략)	<삭 제>
제26조(지급면적의 상한 기준) (생 략)	<삭 제>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생 략) 1. (생 략) 가. 경영이양보조금: 매월 말일 나. 친환경농업보조금: 영 제20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마감한 날 다. (생 략) 라. 경관보전보조금: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사업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농지이양은퇴-----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마. 발농업보조금: 영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발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을 마감한 날 2. (생 략) 가. 경영이양보조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한 날 나. 친환경농업보조금: 영 제22조에 따라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 다. (생 략) 라. 경관보전보조금: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경관보전보조금을 지급한 날 마. 발농업보조금: 영 제40조의9에 따라 발농업보조금을 지급한 날 ②·③ (생 략) [별표 1] 경영이양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1. 지급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령</th><th>지 급 기 간</th></tr> </thead> <tbody> <tr><td>66세 이하</td><td>10년</td></tr> <tr><td>67세</td><td>9년</td></tr> <tr><td>68세</td><td>8년</td></tr> <tr><td>69세</td><td>7년</td></tr> <tr><td>70세</td><td>6년</td></tr> <tr><td>71세</td><td>5년</td></tr> <tr><td>72세</td><td>4년</td></tr> <tr><td>73세</td><td>3년</td></tr> <tr><td>74세</td><td>2년</td></tr> </tbody> </table>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가. (생 략) 나. 대통령령 제21252호 부칙 제3조	연 령	지 급 기 간	66세 이하	10년	67세	9년	68세	8년	69세	7년	70세	6년	71세	5년	72세	4년	73세	3년	74세	2년	<삭 제> 2. (현행과 같음) 가. 농지이양은퇴----- ----- 농지이양은퇴----- ----- <삭 제> 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1. 지급기간 <table border="1"> <thead> <tr> <th>연 령</th><th>지 급 기 간</th></tr> </thead> <tbody> <tr><td>75세 이하</td><td>10년</td></tr> <tr><td>76세</td><td>9년</td></tr> <tr><td>77세</td><td>8년</td></tr> <tr><td>78세</td><td>7년</td></tr> <tr><td>79세</td><td>6년</td></tr> </tbody> </table>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00000호 ----- 제2조	연 령	지 급 기 간	75세 이하	10년	76세	9년	77세	8년	78세	7년	79세	6년
연 령	지 급 기 간																																
66세 이하	10년																																
67세	9년																																
68세	8년																																
69세	7년																																
70세	6년																																
71세	5년																																
72세	4년																																
73세	3년																																
74세	2년																																
연 령	지 급 기 간																																
75세 이하	10년																																
76세	9년																																
77세	8년																																
78세	7년																																
79세	6년																																

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에게는 종	-----
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을 포함하	-----
여 75세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 84세 -----

※ **[별첨]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 및 별지 개정 → 개정**
3개, 삭제 4개

- ① [별표 1] <개정> :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 ②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③ [별지 제2호서식] <개정>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④ [별지 제3호서식] <삭제>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⑤ [별지 제4호서식] <삭제> :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⑥ [별지 제5호서식] <삭제> :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 ⑦ [별지 제6호서식] <삭제> : 친환경축산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1. 지급기간

연 령	지 급 기 간
75세 이하	10년
76세	9년
77세	8년
78세	7년
79세	6년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 가. 지급기간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 나. 대통령령 제00000호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 대상자에게는 종전 규정에 따른 지급기간을 포함하여 84세까지 최대 10년간 지급한다.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진흥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농지이양 방법	비고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농지대장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1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제출기관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 신청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담당 직원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년농등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법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자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소유농지인 경우
 -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농지연금상품), 공사임대위탁(농지연금상품)
 - 나. 임차농지인 경우
 - 경작권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포기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및 현지조사	→	대상자 선정 심사	→	대상자 선정	→	통지
신청인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지급대상 농 지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공 부 실 제	면적 (㎡)	농업진흥 지역여부	농지이 양방법
지급약정 체 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장 소		한국농어촌공사 ○ ○ 지사			
	준비할 사항		신문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인